

예 산 총 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6,086,187	9,482,586
일반회계	301,647,504	9,049,425
특별회계	14,438,683	433,160
기타특별회계	14,438,683	433,160
재정비축진특별회계	578,600	17,358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125,961	63,77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16,481	18,494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544,071	46,322
주차장특별회계	9,365,763	280,97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00,000	6,000
기반시설특별회계	7,807	23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166,57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2,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